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500호
2019. 1. 3.(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조례]

제694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 5
제694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 7
제694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제695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10
제6951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제6952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제695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19
제695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 21
제6955호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 ····· 22
제695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제6957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제6958호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5
제6959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8
제6960호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 29
제696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 33
제6962호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35
제6963호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38
제6964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2
제6965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 43
제6966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4
제6967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5
제6968호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6
제6969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47
제6970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 51
제6971호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55
제6972호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 56
제6973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8
제6974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66
제6975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68
제6976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8

제6977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9
제6978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0
제6979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72
제6980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3
제6981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4
제6982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5
제6983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76
제698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 79
제6985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90
제6986호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1
제6987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92
제6988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5
제6989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 96
제6990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7
제6991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98
제6992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 99
제6993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4
제6994호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5
제6995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7
제6996호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 108
제6997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1
제6998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112
제6999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113
제7000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6
제700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7
제7002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8
제7003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0
제7004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1
제7005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5

[입법예고]

제2019-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6

2. 주요내용
가. 서울시가 투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임기는 책임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982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1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학술단체 또는 민간전문가가 한양도성과 관련된 해외교류·홍보, 학술회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여비,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따르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세계유산등재 관련 민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인정 (안 제4조제2항)
   나. 서울특별시장은 학술단체 또는 민간 전문가가 한양도성과 관련된 해외교류·홍보, 학술회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여비,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983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추진함으로써"를 "추진하고 모든 사회 주체들이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함으로써"로 한다.

제22조 중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우려가 있는 법령 위반 행위"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협력) 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수탁사업, 보조금 등의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 시민 등은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환경보전 시책에 책임과